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0호(號) 1935(昭和 10)년 2월 20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8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 1935(昭和 10)년 3월 10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2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7조(條) 중(中) 「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」의 아래(下)에 「, 회유승차권(廻遊乘車券)」을 추가(追加)함.

제8조(條)중(中)제1호(號)를 삭제(削除)하고 이하(以下) 순차적(順次)으로 올림.

제10조(條) 여객운임(旅客運賃)은 소관(所管)을 달리하는 철도(鐵道) 및 항로(航路)의 소정액(所定額)을 병산(併算)한 것으로 함. 단(但) 환상선(環狀線)을 일주(一周)하는 여객(旅客)에 대(對)한 운임(運賃)은 연대선(連帶線) 접속역(接續線)마다[每] 종료(終了)해서 계산(計算)하는 것으로 함.

학생정기승차권운임(學生定期乘車券運賃)은 각(各) 선(線)의 킬로미터[稭程]를 통산(通算)하여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해 계산(計算)함.